

Korean Tax Update

December 2020, Issue 78

[조세뉴스]

2020 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기획재정부) [전문보기]

12.2(수),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으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가상자산 과세 시기 3개월 유예 등이 포함됨.

2020 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 [전문보기]

12.9(수),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개정내용으로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 신설,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됨.

[판례]

시티투어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0. 7. 17. 선고 2020 두 45742 판결

- 이 사건 사업 용역의 주된 특성이 관광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있고 여기에 여객운송 용역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더라도 이를 운수업이 아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객운송 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바(대법원 2001두10011), 이 사건 사업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관광용역에 해당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국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 두 46485 판결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닌 바(대법원 98두11458, 대법원 2004다23217 등),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0 중 1321, 2020. 11. 12.

-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경우 그 주식 자체가 가지는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 자체가 가지는 가치 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가 가지는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 및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자체의 가치와 별도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증가평균액과 이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가산율을 적용한 합계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렌트로 중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서 2194, 2020. 11. 19.

-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대리·중개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렌트로에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차량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청구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량 소유주로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차량 보험료는 쟁점차량 이용자들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차량 이용자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쟁점차량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와 체결하는 렌트계약상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별도 구분하여 수수하고 있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수하는 쟁점렌트로에서 쟁점보험료상당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단순한 납입대행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외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거래인 쟁점거래의 적정이자율(정상가격) 판단 및 통화선도이익이 정상이자율(정상가격)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19 서 0802, 2020. 11. 23.

-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은행역할을 한다는 자금관리회사는 다국적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역할일 뿐, 대외적으로 공인된 일반은행과의 거래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 자금관리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은행과 달리 다국적 그룹 내에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열사 간 중개자 역할로서 특정계열사의 자금을 예치 받아 자금이 필요한 다른 계열사에게 대여함에 따라 사실상 계열사 간의 금전대차행위를 중개하거나 도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일반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자금관리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보금을 예치한 것이므로 회사채거래도 쟁점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여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유보금을 금전대차방식으로 자

금관리회사에 예치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이란 금전대여의 반대급부로 수령한 이자에 대한 적정이자율을 산출하는 것인 반면 통화선도거래는 외환거래의 환율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통화선도이익을 일반적인 이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달리 세법상 통화선도이익과 이자를 통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라는 별도의 명문규정도 없는 바, 통화선도이익이 정상이자율(정상가격)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평균회수약정일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재조사)

조심 2019 광 4541, 2020. 12. 2.

- 처분청의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지연일수 계산에 있어 평균회수기간 산정의 근거가 된 주요 거래처는 스웨덴, 영국, 중국 등으로, 쟁점매출채권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와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른 선진국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평균회수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국가별·기간별·제품군별·거래규모별·계약조건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으로 하여 지연회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쟁점현지법인에 계속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지급기일을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쟁점현지법인에 분여하고, 결국은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9 서 2082, 2020. 12. 9.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비용(①특수효과, ②의상, ③미술, ④분장·헤어, ⑤조명 관련 위탁용역비)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 디자인샘플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25조의6에서 영상콘

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비용은 당해 세액공제 대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19서3360).

[심사]

이 사건 정비구역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도시지역분)를 환급한 것이 공평과세에 어긋나는지 여부 (기각)

2020-심사-650, 2020. 11. 26.

- 행정안전부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현행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가 아닌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체비지 등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시행자를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 이를 입법미비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비구역의 체비지는 환지계획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체비지로서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있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 한 것으로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도 쟁점규정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형도면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 바 달리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내 공공시설용지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도시지역분)를 환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긴 어려움.

[예규]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 2020. 9. 28.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3 제 1 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 52 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2 조 제 1 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의 일정비율에서 공제하는 투자합계액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설비 투자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 2020. 10. 29.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그 사용자로부터 수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 조의 32 제 6 항 제 1 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2 항 제 1 호 가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멸시효 중단으로 재화 공급일부터 10 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 2020. 11. 25.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 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7 조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 55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 2020. 11. 27.

-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55 조의 2 제 1 항 제 2 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소재 본점의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무처리 지원업무, 제품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4, 2020. 11. 30.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 전 시장조사 및 마케팅, 사무 처리 지원,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 등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업무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78, 2020. 12. 4.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